

---

# 주요 업무 보고

---

2021. 7. 2.

기후환경본부

# 1

## 항공기 소음영향도 현황보고

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김포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소음영향도는 '20년 대비 '21년에 소음대책지역 1.2%, 소음대책 인근지역 2.7% 상승

### □ 현 황

-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자동소음측정망 총 20지점 운영(서울 8, 경기 12)
  - 소음대책지역(6) : 양천 5(신월동주택, 신월코아루, 신월체육센터, 신남초교, 신남중교), 구로 1(고척중교)
  - 소음대책 인근지역(2) : 구로 1(SK허브수), 강서 1(동화빌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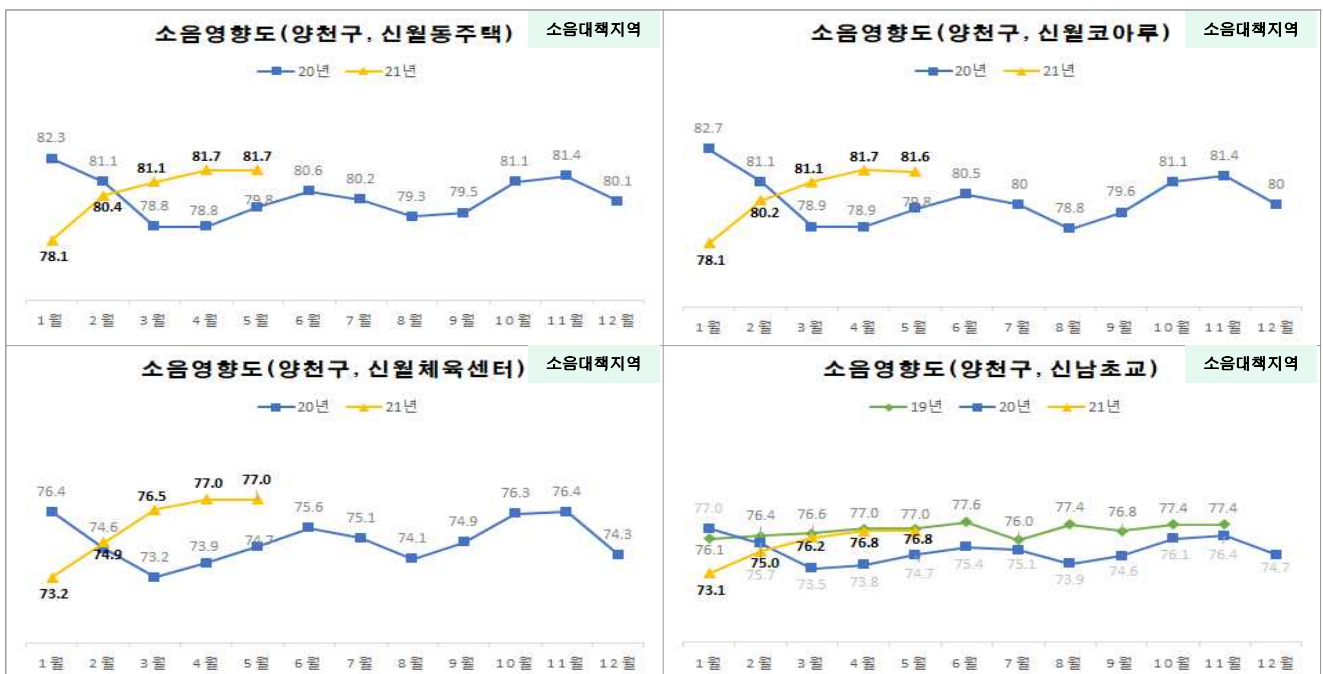
※ '20.1월 자동소음측정망 4지점 추가·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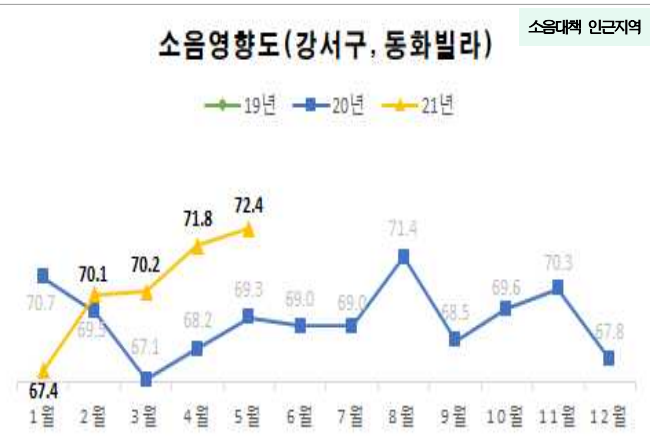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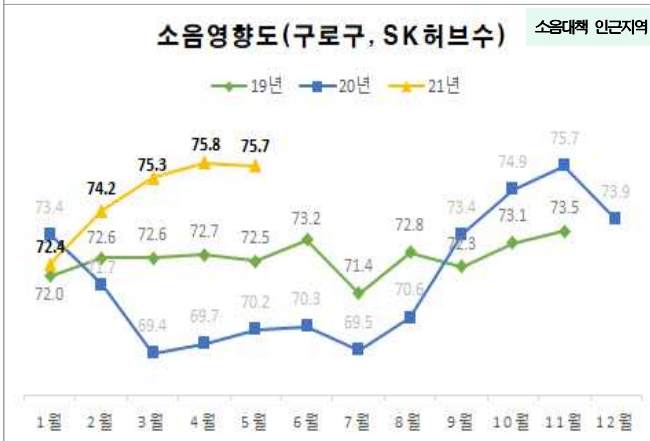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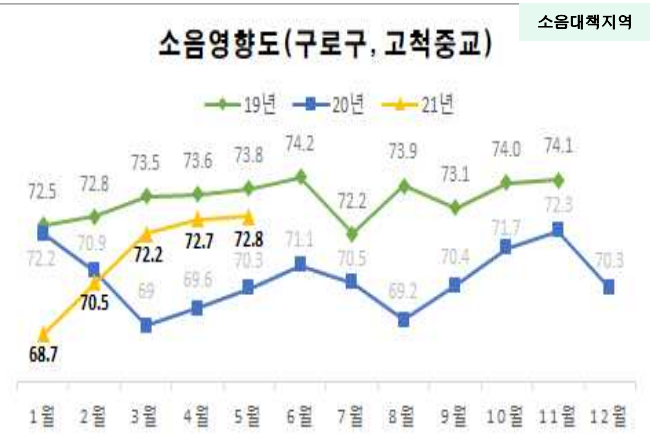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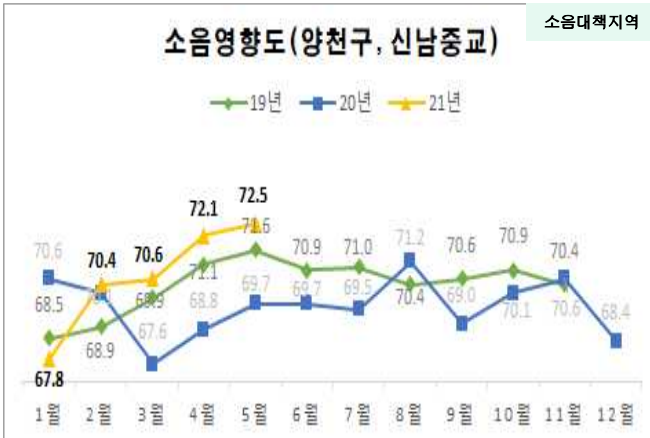
- 양천구의 요청으로 1지점 변경(신월공원→신월동주택), 2지점 추가(신월코아루, 신월체육센터)
- 강서구의 요청으로 1지점 추가(동화빌라)

- '21년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

- '19년 평균 소음영향도(웨클) : 소음대책지역 72.8, 인근지역 72.6
- '20년 평균 소음영향도(웨클) : 소음대책지역 75.1, 인근지역 70.9
- '21년 평균 소음영향도(웨클) : 소음대책지역 76.0, 인근지역 72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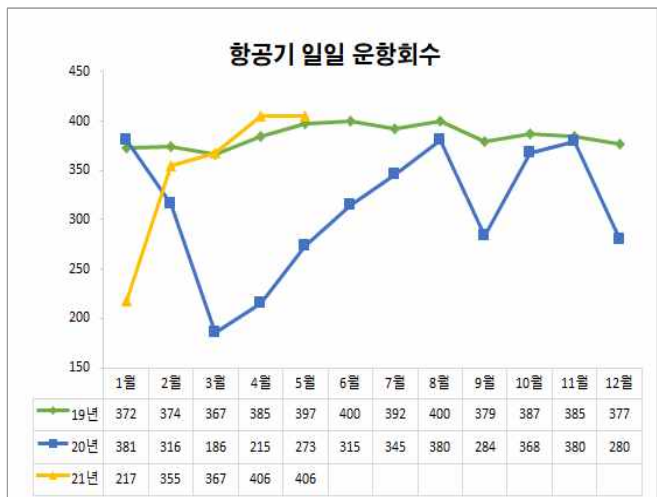
- 구로지역 소음대책 인근지역(SK허브수)의 소음영향도가 '20.8월부터 소음대책지역(고척중교) 보다 높게 나타남





## □ 소음영향도 증가원인 추정

-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회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
- 소음영향도는 기상조건, 운항패턴, 항공기 상태, 조종사 숙련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항으로 정밀한 원인분석 필요



## □ 향후계획

-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(구로구 SK허브수)에 설치된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실시 및 비교측정을 통해 원인분석 예정
  -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등 일정변경: (당초) '21.12월 → (변경) '21.8월

## 2

## 공항소음 관련 제도개선 건의 현황

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(공항안전환경과)에 소관 법령 및 제도 개선 요청함('21.4.6.)

### □ 추진경과

-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요청사항('21.3.5.)
  - 소음측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항공기소음 측정업무를 환경부로 이관
  -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포괄적인 보상 및 지원 요청
  -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(75 → 70웨클) 기준 변경
  -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예산 배분
  - 소음측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
- 국토교통부에 공항소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('21.4.6.)

### □ 세부내용

#### ① 환경부 항공기소음 측정망 적극 활용

-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환경부 상시 측정망 자료 활용

현 행	개정 건의(안)
<p><b>제10조(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)</b></p> <p>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0조(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)</b></p> <p>① 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</u></p>

- ②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 확대 : 사업비 100분의 75 → 사업비 전액
-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을 개정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포괄적인 보상 및 지원

현 행	개정 건의(안)
<p>제19조(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)</p> <p>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<u>사업비의 100분의 75</u>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 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19조(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)</p> <p>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<u>사업비 전액</u>을 주민지원 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.</p> <p>③ &lt;삭 제&gt;</p>

- ③ 소음영향도 기준 강화 : 소음영향도 기준 75웨클 → 70웨클
-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3을 개정하여 소음영향도(75→70) 기준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

현 행	개정 건의(안)
<p>제2조(소음대책지역의 지정·고시)</p> <p>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 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 할 수 있다.</p> <p>1. 제1종 구역: 소음영향도(WECPNL) 95이상            2. 제2종 구역: 소음영향도(WECPNL) 90이상 95미만            3. 제3종 구역: 소음영향도(WECPNL) <u>75이상 90미만</u></p>	<p>제2조(소음대책지역의 지정·고시)</p> <p>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 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 할 수 있다.</p> <p>1. 제1종 구역: 소음영향도(WECPNL) 95이상            2. 제2종 구역: 소음영향도(WECPNL) 90이상 95미만            3. 제3종 구역: 소음영향도(WECPNL) <u>70이상 90미만</u></p>

- ④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주민참여 확대 : 주민수 규정 없음 → 40% 이상
-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주민참여 의무비율 규정을 통해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합리적 예산 배분

현 행	개정 건의(안)
<p>제14조(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(이하 "소음대책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14조(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(이하 "소음대책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하되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40%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</u></p>

- ⑤ 항공기 소음측정 방법 개선 : 주민참여 가능 → 주민 입회 의무화
- 「항공기 소음측정 업무지침」 제12조제1항의7을 개정하여 주민의 항공기 소음측정 신뢰도 제고

현 행	개정 건의(안)
<p>제3장 항공기 소음 일반측정</p> <p>제12조(측정방법)</p> <p>①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7.소음 영향 평가나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<u>가능한 주민이 참여하도록</u>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장 항공기 소음 일반측정</p> <p>제12조(측정방법)</p> <p>①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7.소음 영향 평가나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<u>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입회하에 측정하여야 한다.</u></p>

- ⑥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3개 분소 명칭 변경
-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의 명칭은 '20.1월 조례 개정과 설치 당초부터 시의회와 논의하여 2개 센터와 3개 분소로 구성·운영에 합의
  -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명칭(분소→센터)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조례 개정 추진

### 3

##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용역 추진

김포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, 향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

### □ 용역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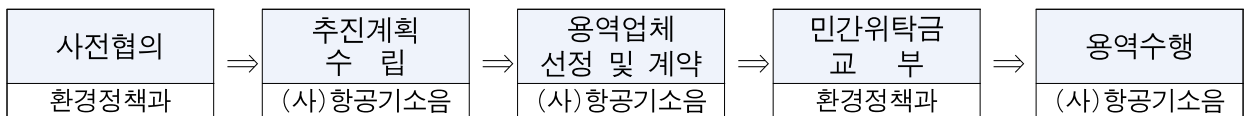
- 용역명 :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만족도 조사 및 정책 개선 용역
- 사업기간 : 2021.6월 ~ 2022.3월(10개월)
- 용역비 : 금100,000천원(부가세, 용역운영비 포함)

※ 예산과목 : 환경정책과,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,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, 민간위탁금

### ○ 용역내용

- 국내·외 소음대책사업(공항소음대책사업, 주민지원사업 등) 현황조사
-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
- 국토교통부 공항소음대책사업(방음·냉방시설 설치사업) 실태조사
- 공항소음 관련 제도의 합리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
-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센터의 운영방안 제시

### ○ 추진절차



### ○ 결과활용

-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반영 및 중장기적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-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정책 개선안 건의

### □ 향후계획

-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: '21.7.13.((사)항공기소음)
- 용역업체 계약 체결 : '21.7.16.((사)항공기소음)
- 착수·중간보고회 및 준공 : '21.7. ~ '22.3.

작성자 : 환경정책과장 : 이동률 ☎2133-3510    환경분쟁조정팀장 : 신귀식 ☎4250    담당 : 이진 ☎4254